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1월 19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삭제됨에 따라 충청북도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에 적용된 관련조항의 삭제 및 일부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제4조(변소), 제5조(지하층의 설치), 제7조(건축재료의 품질), 제 12조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, 제15조(대지안의 공지)를 삭제
-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%에서 500%로하며 단서조항의 용적률을 300%에서 400%로 완화
- 토지의 매각규모는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삭제
- 부칙조항의 시한규정을 법에서 규정한 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조문정리
-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 정리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이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모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
따라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을 보면

첫째,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지하층의 설치, 건축재료의 품질, 대지
면적의 최소한도, 대지안의 공지 조향 등 5건은 모법인 건축
법의 개정으로 관계규정을 삭제하고

둘째,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%에서 400%와 500%로 완화한 것과
토지의 매각규모를 삭제한 것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
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과 관련하여 조향을 정리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